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45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최은석 · 안철수 · 김태규
김상훈 · 김은혜 · 이소희
김선교 · 김장겸 · 서명옥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광고·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중 “소비자피해보상의”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 등 소비자피해보상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조건 표시 등 및 계약 서면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u>비자피해보상의</u> ----- ----- -----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